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행 전년도 12월 20일”을 “시행하는 연도의 2월 말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 전년도 12월 20일”을 “시행하는 연도의 2월 말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5명”을 “28명”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3조 제3항에”를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대응 절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안관제를 위한 시스템 설치·도입 또는 24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에 관한 사항

4. 상용메일 접속 차단 관련 사항

5.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외국인 접촉 관리·통제 현황

6.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보안”을 “사이버보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주요 정보시스템 진단 및 모의해킹 등에 의한 웹 취약점 진단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취약점 진단·자문 등에 관하여는 신청을 받지 않고 지원 대상자를 선

정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교육 후 30일 이내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이 제3항의 통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데도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2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2. 대상기관의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공유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나 침해 행위의 현황과 그 조치 등에 관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한다.

별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 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 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u>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u> <u>립하여야 한다.</u>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 ----- ----- <u>시행하는 연도의 2월 말일</u>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방 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 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u>시행 전년도 12월 2</u> <u>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u>시행하는 연도의 2월</u> <u>말일</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u> <u>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u>28</u> <u>명</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 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 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 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 위산업기술의 보호) ----- ----- ----- -----

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생략)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대응 절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안관제를 위한 시스템 설치·도입 또는 24시간 모니터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링 담당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에 관한 사항

4. 상용메일 접속 차단 관련 사항

5.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외국인 접촉 관리·통제 현황

6.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항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8조의2(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
· 자문

<신설>

나. (생략)

2. ~ 4. (생략)

<신설>

사항.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 사이버보안 -----

나. 주요 정보시스템 진단 및 모의해킹 등에 의한 웹 취약점 진단

다. (현행 나목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취약점 진단·자문 등에 관하여는 신청을 받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생략)

②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

<신 설>

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이 제3항의 통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데도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2. 대상기관의 네트워크 및 시

<신 설>

스텝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공
유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
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
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
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방위산
업기술의 국외 유출이나 침해
행위의 현황과 그 조치 등에 관
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구)	
연 락 처	(02) 748 - 5613